

2026년 「연안안전지킴이」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

2026년도 「연안안전지킴이」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·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6년 3월 23일

해양경찰청장

I

보조사업 내용

가. 보조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
- 사업목적 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)에 근거, 연안사고예방활동 및 구조지원 등을 목적으로 채용된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지원
- 사업규모 :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, 연안안전지킴이 194명
- 운영기간 : '26. 5. 2. ~ 10. 31. / 6개월
- 사업예산 : 1,567백만원(민간경상보조)
- 선정방법 : 해양경찰청 자체공모 및 심사를 통한 결정
- 공모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 보조사업자 공모,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을 진행

나. 사업 내용

○ ‘연안안전지킴이’ 활동비 지급

- 매월 1회 정기적인 연안안전지킴이 임금 지급
※ 지급 및 평일·휴일 근로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활동비 준수

○ 단체피복·신분증(표준사양서 기준) 제작, 기타 필요물품 구입·배부

- 물품·용역 계약 시 정부의 입장에서 계약 체결(나라장터)

○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

○ ‘연안안전지킴이’ 직무교육(이론, 실무 등), 홍보 지원

○ 기타 보조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담 및 자료보관

-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(보조금법 제 26조의 5)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의무적으로 사용, 보조금 신청·편성·지출 및 정산 등 보조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
- 보조사업 총액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회계종료일 기준 4개월 이내 보조사업 관련 정보 공시
※ 보조금법 제26조의10,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
- 보조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 「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지침」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
※ 보조금법 제27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, 제12조의2
- 보조사업 총액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1개월 이내 공시
※ 보조금법 제27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

가. 공모 일정

- 공고 및 신청 기간: '26. 3. 23.(월) ~ 3. 29.(일)
- 선정방법 : 해양경찰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·평가
 - * 평가결과를 토대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보조사업자 선정
- 최종발표 : 선정위원회 2일 이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

나. 참가 자격

- 해양안전과 관련된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단체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
 - 전국에 지역별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, 수행능력, 사업 전략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고려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응모 제한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
다. 평가 기준

- 선정위원회 서면심사 및 평가위원 대면평가 실시

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

기준항목	세부 기준(배점)
수행 능력 (20점)	연안사고 예방활동 관련 해양경찰 업무의 보조·지원 등 유사 실적 (건당 10점, 최대 20점)
사업 전략 (40점)	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 (10)
	사업 계획의 충실성, 타당성 (10)
	사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(10)
	사업 추진전략 및 효과성 (10)
사업 관리 (40점)	보조사업자 과제수행 및 보조금 법령 이행방안 (20)
	예산집행·회계처리의 투명성 (20)

III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가. 신청방법 : 「e-나라도움」 (www.gosims.go.kr) 인터넷으로만 가능

※ 직접방문·우편·E-mail·팩스 제출은 불가함

e-나라도움'을 통한 신청 방법(예시)

- ① 「e-나라도움」 보조사업자업무 홈페이지 접속(사용자 등록 필요)
- ② 사업수행관리 > 신청관리 > 사업신청관리 > 공모현황 이동
- ③ <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> 검색
- ④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※ 상기 방법은 예시이며, 세부 가입·응모 방법은 「e-나라도움」 콜센터(1670-9595)에 문의바랍니다.

나. 제출 서류

- 사업신청서(별첨 1) 및 단체소개서(별첨 2), 사업계획서(별첨 3) 각 1부
- 기타 구비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 1부
- 사업신청서에 명시·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

※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처 :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☎ (032) 835-2439

가. 사업신청 관련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우리 청과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
- 해양경찰청은 심사 등 필요 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,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 -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자격 조건 미달 시 접수 불가
 -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허위 작성사실 판명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 단체의 부담으로 함
- 사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

나.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

- 최종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8조에 에 따라 통보된 ‘교부조건’ 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.
- 보조사업자는 해양경찰청 사업계획에 따라 ‘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(e-나라도움)’ 을 통해 편성* 후 집행하여야 함.
 - ※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」의 별표1 ‘보조비목·세목별 산정기준’ 준수
-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청에 있으며, 사업집행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

- 당해 사업종료 시 「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」에 따른 ‘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’, ‘감사보고서’ 등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
 - ※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참조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」, 기획재정부 공고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등의 법령·지침에 따름

V

사업신청서 작성지침(권고사항)

- 가. ‘한글’ 을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규격은 A4(종방향)으로 작성
- 나. 공고문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
 - ※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
- 다.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
- 라.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
 - ※ “사용가능하다”, “할 수 있다”, “고려하고 있다”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,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
- 마. 목차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“해당 없음” 으로 간략히 기술

【붙임 2】 단체소개서

기본 정보	- 주 소 : (우편번호 -)	
	- 전 화 :	- 사업담당자 :
	- FAX :	- 휴대폰 :
	- 홈페이지 :	- E-Mail :
설립 목적		
단체 연혁		
인력 현황	* 전반적인 인력구성과 사업 전종요원이 가진 전문성, 효율적인 업무분장 등	
기구 현황	* 조직 및 인력구성 <조직도 첨부>	
산하 조직	* 전국 지부현황 명기	
26년 예산 현황	* 예산 총액 및 재원 구성현황 등 예산 편성·집행 사항 명기	
25년 주요 사업 실적		
26년 주요 사업 계획		

□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

① 2025년도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	사업성과	소요금액 (단위:백만원)	자부담/ 국고보조금	비고
사업 1						
사업 2						
사업 3						

② 2024년도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	사업성과	소요금액 (단위:백만원)	자부담/ 국고보조금	비고
사업 1						
사업 2						
사업 3						

③ 2023년도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내용	사업성과	소요금액 (단위:백만원)	자부담/ 국고보조금	비고
사업 1						
사업 2						
사업 3						

※ 주요사업 추진 및 연안사고 예방활동 관련 해양경찰 업무의 보조지원 등 유사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첨 제출바랍니다.

【붙임 3】 사업계획서

보조사업 개요

단 체 명			
사 업 명	'26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		
사업기간	'26. 5. ~ 10.	사업지역	전국 연안위험구역 97개소
사업대상	연안안전지킴이	대상자수 (실인원수)	194명
사업목적			
사업 계획 (요약)			
사업 계획서 목차	목차		쪽수

《사업 추진목표》

※ 사업의 추진 목표·전략을 아래 양식을 활용 작성

□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

○

-

□ 보조사업 수행 경비 및 산출 기초

○

-

※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 및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내용을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

《보조사업 경비 사용 및 추진계획》

□ 연안안전지킴이 활동비 지급 및 4대 보험 중 산재·고용보험 가입대행

※ 체계적인 활동비 지급체계 및 과·오지급건 환수 방법 등을 제시

□ 물품·용역 등 계약 및 회계처리

※ 보조사업자 주도의 물품·용역 제작·배부 체계, 물품 구입, 사후관리 등 제시

□ 자체 예산집행·회계처리규정 등

※ 예비·운영비 등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예산집행·회계처리와 관련된 단체(기관)의 규정(지침) 및 투명성·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기재

